

회의록

| | | | |
|------|---|----|-------------------|
| 회의일시 | 2021.11.18.(목) 15:00~16:00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us) |
| 참석의원 | 유대현, 조재혁, 황병삼, 김만길, 이진근, 강월숙, 오승균, 정광영, 김상훈 | | |
| 불참의원 | 김정일(총장 직무대리), 오계수 | | |
| 기타참석 | 김정곤(기획처장), 김신용(기획평가팀장), 이주명(예산담당) | | |

| | |
|-----|--|
| 회의명 | 제56차 대학평의위원회 |
| 의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1회계연도 적립금 용도 변경(안) 자문 2) '21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3) 대학평의위원회규정 개정(안) 심의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 | |
|------|--|
| 회의내용 | <p>□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본교 대응지침 개정안내(6차 개정)”에 따라 대면/비대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나 외부 위원의 참석 예정으로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함.</p> <p>□ 김정일 의장이 총장 직무대리인 상황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유대현 평의원이 의장대행을 맡아 개회선언을 하고 김신용 기획평가팀장의 성원보고 및 강월숙 평의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p> <p>[안건1] '21회계연도 적립금 용도 변경(안) 자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유대현 의장대행은 기획처에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지난 11월 9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였음을 설명하고, 2021회계연도 적립금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회의자료와 같이 변경 사유, 필요금액, 기금 용도 변경 가능 예상 금액, 용도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함. ◦ 유대현 의장대행은 기금 용도 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김정곤 기획처장이 답변함. ◦ 황병삼 의원은 본 안건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 내용임을 설명하고 용도 변경(안)에 대해 동의함을 밝힘. ◦ 유대현 의장대행은 평의원들의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참석한 평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적립금 용도 변경(안)을 원안대로 자문하기로 함. <p>[안건2] '21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건 자문을 위하여 유대현 의장대행은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주명 예산담당자에게 요청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의자료 및 평의원들에게 기제공한 자금예산서를 바탕으로 등록금회계 수입/지출, 비등록금회계 수입/지출 주요 조정 내역(수입액 조정, 예산 부족분 조정, 여의도순복음교회 |
|------|--|

장학금 조정, 기금 용도 변경 조정 등)을 본예산과 비교하여 설명함.

- 유대현 의장대행은 평의원들의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참석한 평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자문하기로 함.

[안건3] 대학평의회규정 개정(안) 심의

-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유대현 의장대행은 대학평의회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김신용 기획평가팀장에게 요청함.
- 김신용 기획평가팀장은 회의자료와 같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각 조별로 설명하고, 절차상 법인 정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함.
- 이진근 평의원은 평의원 구성 변경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힘.
- 유대현 의장대행은 평의원들의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참석한 평의원 중 반대 의사를 밝힌 이진근 평의원 외 다른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학평의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함.

[안건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본 안건 진행을 위하여 유대현 의장대행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설명을 김신용 기획평가팀장에게 요청함.
- 김신용 기획평가팀장은 회의자료와 같이 법인사무국의 요청 현황, 임기 종료 예정 임원 명단, 관련 규정(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평의회에서 3명의 위원 추천이 필요함을 설명함.
- 유대현 의장대행은 추천 기한에 대해 질의하고 김신용 기획평가팀장이 답변함.
- 유대현 의장대행은 평의원들에게 위원의 추천을 부탁함.
- 황병삼 평의원은 학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유대현 평의원을 추천함.
- 유대현 의장대행은 조재혁 평의원과 황병삼 평의원을 추천하고, 평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함.
- 오승균 평의원은 앞서 추천을 받은 3명의 추천 대상자에 대해 재청함을 밝힘.
- 이진근 평의원은 조재혁 평의원과 황병삼 평의원 추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힘.
- 유대현 의장대행은 평의원들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참석한 평의원 중 반대 의사를 밝힌 이진근 평의원 외 다른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본인, 조재혁 평의원, 황병삼 평의원을 추천하기로 함.
- 이주명 예산담당자는 현재 등록금회계 예산 현황을 설명하고 기금 인출 및 용도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추가로 설명함.
- 김신용 기획평가팀장은 이번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관계로 회의록 간서명은 생략하되 개별 회의록 공유 및 개별 참석 확인 서명을 받을 것을 안내함.

□ 의장의 폐회선언과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

- 붙 임 : 1. 위원서명지 위원별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유 대 현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조재혁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김병삼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김만길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이진근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강월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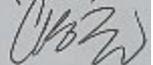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윤승조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정 광 영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김삼훈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김정근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1.11.18.(목)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기신응cred (서명)

제56차

대학평의원회

- 일 시 : 2021.11.18.(목) 15:00~
- 장 소 : Zoom 온라인 화상 회의
- 안 건 : 1) 2021회계연도 적립금 용도 변경(안) 자문
2)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3) 대학평의원회규정 개정(안) 심의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안건1] '21회계연도 적립금 용도 변경(안) 자문

※ 기금운용심의회 11.09. 회의 개최, 심의 및 승인

(기획평가팀-2021-1487(2021.11.12.) “2021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결과 보고”)

1. 변경 사유 : 시간강의료 및 초과강의료, 조교 인건비 예산 부족

(교무학사팀-2021-1570(2021.10.12.) “2021학년도 학부 시간강의료 및 초과강의료 예산 추경 요청”, 인사총무팀-2021-1210(2021.07.16.) “인사총무팀 예산배정 요청의 건”)

2. 필요 금액 : 872,632천원

(시간강의료 및 초과강의료 398,725천원 + 조교인건비 473,907천원)

3. 용도 변경(안) : 임의건축기금 → 임의특정목적기금(인건비) (단위: 원)

| 구분 | '20회계 결산 기준 | 변경금액 | 변경 후 잔액 | 비고 |
|----------|----------------|--------------|----------------|-------------|
| 임의연구기금 | 1,550,858,217 | | 1,550,858,217 | |
| 임의건축기금 | 33,228,444,313 | -872,632,000 | 32,355,812,313 | |
| 임의장학기금 | 126,719,254 | | 126,719,254 | |
| 임의퇴직기금 | 194,414,254 | | 194,414,254 | |
| 임의특정목적기금 | 29,587,139 | | 29,587,139 | 최자실컨퍼런스 행사비 |
| | 0 | +872,632,000 | 872,632,000 | 인건비 |
| 합계 | 35,130,023,177 | | 35,130,023,177 | |

가. 임의건축기금 중 등록금으로부터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적립된 적립금 약 89억원은 용도변경 불가

나. 임의건축기금 중 교외 기숙사 매각 등으로 적립된 약 91억원은 교육부가 처분 허가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함(건축기금 적립이 처분 허가 용도이므로 변경 불가)

다. 기본재산 매각 계좌의 약 25억원은 용도 변경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함

라. '20회계 결산 기준 임의건축기금 중 기타 건축적립금 약 126억원 중 용도 변경

4. 기타사항

가. 등록금 수입 감소 현황에 따른 학부 시간강의료 예산 감축을 위한 개선 계획 마련 요청

나 '21회계연도 중 예산 감축 운용으로 일부라도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해당 예산을 적립금으로 반환 예정

[안건2] '21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1. 기본 방향

-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 수입액 및 지출액 조정
- 단위부서별 예산 점검 결과에 따른 수입액 조정
- 2020회계연도 미사용차기이월자금 반영
- 단위부서별 예산조정(전용, 반납, 이관 등) 사항 반영
- 기타 수지 차액에 따른 예산 조정

2. 예산액 총괄

(단위:천원)

| 구 분 | '21추경예산 | '21본예산 | 증감(△)액 |
|---------------|------------|------------|---------|
| 세입/세출 총예산액 | 39,922,732 | 39,119,697 | 803,035 |

3. 주요 조정사항

- (수입)'20회계 미사용차기이월자금 반영
- (수입)대학혁신지원사업 실지원비 확정에 따른 조정
- (수입)기부금 수입액 조정(여의도순복음교회 장학금 지원 등)
- (수입)기금 용도 변경에 따른 투자기타자산수입액 조정
- (수입)단위부서별 예산점검에 따른 조정
- (지출)기금 용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시간강의료, 초과강의료, 조교인건비)
- (지출)수지 차액에 따른 예산 조정
- (지출)부서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조정(전용, 반납, 이관 등) 반영

4. 계정별 편성 현황

○ 수입

(단위: 천원, %)

| 계정 | 추경예산 | 비율 | 본예산 대비 | 본예산 | 비율 | 증감 |
|----------|------------|------|--------|------------|------|----------|
| 총액 | 39,922,732 | 100 | 102.05 | 39,119,697 | 100 | 803,035 |
| 등록금수입 | 25,043,011 | 62.7 | 64.0 | 25,108,155 | 64.2 | △65,144 |
| 전입및기부금수입 | 10,781,182 | 27.0 | 27.6 | 10,539,947 | 26.9 | 241,235 |
| 교육부대수입 | 1,276,998 | 3.2 | 3.3 | 1,592,645 | 4.1 | △315,647 |
| 교육외수입 | 295,891 | 0.7 | 0.8 | 288,950 | 0.7 | 6,941 |
| 투자기타자산수입 | 1,515,079 | 3.8 | 3.9 | 750,000 | 1.9 | 765,079 |
| 고정부채입금 | 30,000 | 0.1 | 0.1 | 88,000 | 0.2 | △58,000 |
| 전기이월자금 | 980,571 | 2.5 | 2.5 | 752,000 | 1.9 | 228,571 |

○ 지출

(단위: 천원, %)

| 계정 | 추경예산 | 비율 | 본예산 대비 | 본예산 | 비율 | 증감 |
|----------|------------|------|--------|------------|------|------------|
| 총액 | 39,922,732 | 100 | 102.1 | 39,119,697 | 100 | 803,035 |
| 보수 | 17,692,006 | 44.3 | 45.2 | 16,706,049 | 42.7 | 985,957 |
| 관리운영비 | 6,498,249 | 16.3 | 16.6 | 5,549,556 | 14.2 | 948,693 |
| 연구학생경비 | 13,427,634 | 33.6 | 34.3 | 12,782,423 | 32.7 | 645,211 |
| 교육외비용 | 64,313 | 0.2 | 0.2 | 75,627 | 0.2 | △11,314 |
| 예비비 | 306,637 | 0.8 | 0.8 | 2,678,431 | 6.8 | △2,371,794 |
| 투자기타자산지출 | 317,110 | 0.8 | 0.8 | 317,110 | 0.8 | 0 |
| 고정자산매입지출 | 1,160,583 | 2.9 | 3.0 | 634,501 | 1.6 | 526,082 |
| 고정부채상환 | 30,000 | 0.1 | 0.1 | 88,000 | 0.2 | △58,000 |
| 차기이월자금 | 426,200 | 1.1 | 1.1 | 288,000 | 0.7 | 138,200 |

[안건3] 대학평의원회규정 개정(안) 심의

※ 학교법인 정관의 제8장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개정 후, 시행이 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개정(안)이 변경·조정될 수 있음.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p>제3조(구성 및 위촉) ①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 1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인 <p>②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 또는 총원우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p>제3조(구성 및 위촉) ①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u>11명 이상의</u>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3인 2. 직원 <u>3인</u> 3. 학생 <u>3인(학부 2인, 대학원 1인)</u> 4. 동문 1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u>1인</u> 6. <u>조교 1인</u> <p>②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부는 <u>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총장이 위촉하며, 대학원은</u> 총원우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u>총동문회와</u>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5. <u>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개정 ◦ 교수, 직원, 학생 구성원 동수로 구성 ◦ 학부 평의원 당연직 명시 ◦ 총동문회 명시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p>제4조(자격) ①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평의원은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직원 평의원은 정규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3. 학생 평의원은 2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4. 동문 및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 <p>제4조(자격) ①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평의원은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직원 평의원은 정규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3. 학생 평의원은 2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4. 동문 및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5. <u>조교 평의원은 재직 중인 자</u> | <p>◦ 조교 평의원 구성에 따라 개정</p> |
| <p>제6조(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학생평의원은 연임할 수 없다.</u></p> <p>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③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④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 <p>제6조(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u></p> <p>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③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④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 <p>◦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개정</p> |
| | <p>부 칙</p> <p>(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 |

[안건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 관련내용: 법인사무국 2021-68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자 추천 요청
2. 임기 종료 예정 임원 명단

| 구분 | 성명 | 임기 |
|------|-----|-------------------------|
| 개방이사 | 이성규 | 2019. 4. 2.-2022. 4. 1. |
| 개방감사 | 박정환 | 2020. 2. 4.-2022. 2. 3. |

3. 관련규정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①추천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②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3조(기능) ①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②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는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